

「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폐지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구미시에 부존재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기반시설특별회계 잔액 정리추경 세출처리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2008. 3. 28. 폐지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구미시에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「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관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·고시의 이력이 없으며, 향후에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「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」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